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하며, 비제조업 사업장이나 임차인도 업종별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6조제2항, 제3항)

나. 현재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서도 허용함. (안 제36조의4제2항제3호)

다. 산업시설구역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공장을 임차한 자가 다른 업종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업종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제5항제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중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프로그램 공급업

바. 공연시설 운영업

사. 공연 기획업

아.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제6조제2항제10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온라인 교육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관련 교육에 한함)

27. 법무관련 서비스업

28.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한다.

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정보 서비스업

가. 뉴스 제공업

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다.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 영상물,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제19조제4항제1호 중 “입주허가”를 “입주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같은 법 제16조제3항”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한다.

제43조제5항제2호 중 “공장설립을 완료한”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로,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를 “취득 또는 임차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와 다른 업종으로”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로, “경우”를 “경우(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생 략)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②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프로그램 공급업 바. 공연시설 운영업 사. 공연 기획업 아.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10.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온라인 교육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관련 교육에 한함)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삭 제>
16. ~ 26. (생 략)	16.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법무 관련 서비스업
<신 설>	28.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27. (생 략)	29. (제27호에서 이동)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정보 서비스업

	가. 뉴스 제공업 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다.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상물,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⑤ ---------- ---------- ----------. ----- ---------- ---------- ----------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법무관련 서비스업	<삭 제>
1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삭 제>
16.·17. (생 략)	14.·15. (각각 제16호 및 제17호에서 이동)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1. ---------- 입주계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생 략)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마. ~ 카. (생 략)	라. ~ 차. (현행 마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	2.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 취득 또는 임차한 자가 기존

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주기업체와 다른 업종으로 ---------- ---------- ---------- ----------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② (생 략)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 ---------- ----------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 ---------- ------ 경우(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한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194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중 보정용 인조눈을 제조하는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